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603

발의연월일: 2021. 11. 30.

발 의 자:문진석・김정호・서영석

송갑석 • 윤영덕 • 이정문

이형석 • 인재근 • 조오섭

조응천 · 홍익표 의원

(11인)

제안이유

글로벌 팬데믹이 항공운송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크게 작용하면서 전세계 항공운송사업자가 경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운데 일부 국내 항공운송사업자도 장기간 운항을 전면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고 국토 교통부는 운항기술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60일을 초과하여 운항을 중지한 경우,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을 시작하기 전에 인력, 정비, 시 설, 운항관리지원 및 정비관리지원에 대해 검사받은 운항증명의 유효 기간을 정함으로 실제로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효력을 정지시키 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유효기간 설정은 항공운 송사업을 제한하는 사안으로 법률로 상향할 필요가 있고, 항공운송사 업자가 경영정상화 등 사유로 항공기 운항을 재개하고자 할 경우 운 항증명 효력을 갱신하는 검사에 대한 법률근거가 없고, 운항증명 효력 정지 중에 항공기 운항을 재개하여도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에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승객 안전을 위해 항공운송사업자가 60 일을 초과하여 항공기 운항을 중지한 경우 운항증명 효력을 정지토록 하고, 운항재개를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운항 하여 항공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운항체계가 변경된 경우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도록 명확히 위임근 거를 정함(안 제90조제5항).
-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사업자가 60일을 초과하여 연속적으로 운항을 중지한 때는 항공기 안전운항과 승객의 안전을 위해 운항증 명 효력의 정지를 명하여야 함(안 제90조제9항 신설).
- 다. 항공운송사업자는 운항증명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항을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 사를 받아야 함(안 제90조제10항 신설).
-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안 제10항에 따라 시행한 검사 결과가 항공기 안전운항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 명 효력의 정지를 해제하여야 함(안 제90조제11항 신설).
-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가 운항

증명 효력 정지 중에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함(안 제91조제1항제39호의2 신설 및 제95조제1항).

바. 법 시행 당시 60일을 초과하여 연속적으로 운항을 중지하고 있는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함(안 부칙 제2조).

법률 제 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로 하고,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60일을 초과하여 연속적으로 운 항을 중지한 때에는 운항증명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한다.
- ① 제9항에 따라 운항증명의 효력이 정지된 항공운송사업자가 그 운항을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항공기의 안전운항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효력의 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91조제1항 단서 중 "제39호 또는 제49호"를 "제39호, 제39호의2 또는 제4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9의2. 제90조제9항에 따른 운항증명 효력 정지 중에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제95조제1항 단서 중 "제39호 또는 제49호"를 "제39호, 제39호의2 또는 제49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항증명 효력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60일을 초과하여 연속적으로 운항을 중지하고 있는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혂 제90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 제90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 명) ① ~ ④ (생 략) 명)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 업자는 최초로 운항증명을 받았 을 때의 안전운항체계를 유지하 여야 하며, 노선의 개설 등으로 안전운항체계가 변경된 경우에 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 시하는 검사----.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의 <u><신 설></u> 안전운항과 승객의 안전을 위하 여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 업자가 60일을 초과하여 연속적 으로 운항을 중지한 때에는 운 항증명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한 다. <신 설> ⑩ 제9항에 따라 운항증명의 효 력이 정지된 항공운송사업자가 그 운항을 다시 시작하려는 경 우에는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 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 야 한다.

<신 설>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 저명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9호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9. (생 략) <u><신 설></u>

40. ~ 49. (생 략) ② (생 략)

제95조(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 저 증명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 관은 제96조 제1항에서 준용하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항공기의 안전
운항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효력의 정지를 해제하
여야 한다.
네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
명 취소 등) ①
제39호, 제39호의2 또는 제49호
1. ~ 39. (현행과 같음)
39의2. 제90조제9항에 따른 운
항증명 효력 정지 중에 항공
기를 운항한 경우
40. ~ 4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네95조(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
증명 취소 등) ①

는 제90조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기사용사업자가 제91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 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91조 제1항 제1호, 제39호 또는 제49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제39호, 제39호의
2 또는 제49호
② ~ ⑥ (현행과 같음)